M - 170 - 2013

철강제품 적재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

2013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 개요

- o 작성자: 한국안전학회 이우봉
- o 제·개정 경과
  - 2013년 11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 - HSE, Safety in the storage and handling or steel and other metal stock, ISBN 978 0 7276 1986. 3 HSE Books
  - HSE, Safety in the use of pallets: plant and Machinery Guidance Note PM15, ISBN 0-7176-522-7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3년 11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M - 170 - 2013

# 철강제품 적재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

# 1. 목 적

이 지침의 목적은 철강제품의 적재에 대한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제품 종류별로 안전한 적재방법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에게는 제품 적재와 관련하여 위험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작업환 경을 제공함에 있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철강제조회사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회사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길이 또는 너비를 가공한 철강제품의 적재에 적용하며 제품의 취급 및 인양작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자립형 적재(Free standing)" 라 함은 철강제품을 지지대 또는 받침대 없이 제품 그대로를 바닥에 쌓아서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구름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임목 또는 쐐기로 고정하여 적재하는 것을 포함한다.
- (나) "선반형 적재(Racking)"라 함은 철강제품을 고정된 지지대 위해 설치된 가로대 선반(받침대)위에 제품을 얹어 적재하거나 세워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.
- (다) "적층형 적재(Stacking)"라 함은 철강제품을 자립형 적재 또는 선반형 적 재에서 여러 층으로 쌓아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 4. 사업주와 근로자 의무

# (1) 사업주 의무

- (가)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유지하여야 한다.
- (나) 법적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철강제품의 저장시스템 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.
- (다) 위험성 평가과정, 위험제거 실행 대책 수립 시 근로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(라) 안전한 적재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교육과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(마) 근로자가 제품저장에 사용하는 장비가 안전하게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.
- (바)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제공하고 착용방법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.

#### (2) 근로자 의무

- (가) 근로자 자신의 안전 및 주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조심하고 배려하여야 한다.
- (나) 사업주 및 안전보건상 책임을 가진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.

M - 170 - 2013

#### 5. 적재 시스템 설계

5.1 적재장 배치 시 고려 사항

적재된 제품이 갑자기 붕괴되거나 떨어지면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적재장 설계가 안전상 매우 중요하며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(가) 적재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작업장 배치
- (나) 적재장에서 작업하는 시간을 최소화
- (다) 제품의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에 대한 제어방법(이동방지용 지주, 지지대, 체인 설치 등)
- (라) 근로자가 선반형 적재대, 적층된 제품 위에 올라 갈 필요성을 최소화
- (마) 크레인 등 적재하역 장비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
- (바) 이동통로, 발판, 사다리 및 안전 난간 등 안전한 접근방법
- (사) 적재시 안전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영향(예 : 날씨, 진동 등)
- (아) 근로자의 이동통로와 구분되는 지게차 등 운반차량의 안전한 이동통로
- 5.2 안전한 적재방법 선정 시 고려 사항
  - (1) 자립형 적재 및 적흥형 적재는 제품들이 떨어지거나 움직여서 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적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  - (2) 선반형 적재대는 제품의 중량을 견딜 수 있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  - (3) 다양한 철강제품의 종류에 따라 안전한 적재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아래

M - 170 - 2013

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(가) 적재할 제품의 물리적 특성(크기, 중량, 형상, 표면상태, 무게중심, 안정성 등)
- (나) 적재형태에 따른 안정성
- (다) 인양 및 취급설비의 종류
- (라) 적재할 제품의 최대무게, 양 및 접근성
- (마) 제품의 입출고 빈도
- (바) 제품의 포장형태(Banding 등)
- (사) 제품 운반차량(지게차)과 충격 시 충격하중 정도
- (아) 제품의 이동 또는 붕괴 시 이동통로 밖으로의 이동을 봉쇄할 수 있는 공 간과 방책

## 6. 적재 시스템의 선정

6.1 제품의 적재 시스템 구분

철강제품의 적재형태는 크게 나누면 아래의 적재형태 중 하나이다.

- (1) 자립형 적재(Free standing type)로서 제품을 고정된 지지대나 적재선반이 없이 바닥에 그대로 적재하거나 적층으로 적재하는 것이다.
- (2) 선반지지형 적재(Rack supported type)로서 제품을 고정된 지지대와 그 위에 있는 가로대 선반 위에 적재하는 것이다.
- 6.2 적재시스템의 형태 및 적재방법의 선정

M - 170 - 2013

적재시스템 형태와 적재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(1) 제품형상별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가) 강관 및 봉강류 : 길고 지름이 작음
- (나) 형강(ㄱ형강 및 ㄷ형강)류 : 길고 폭이 좁음
- (다) H빔: 길고 폭이 넓음
- (라) 코일류: 지름이 크고 둥글며 폭이 넓거나 좁음
- (마) 판재류 : 길이와 폭이 넓음
- (2) 사용될 제품의 적재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3) 예상 적재제품의 양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6.3 제품 형상 특성에 따른 적재시스템의 안정성
  - 6.2 항의 여러 요인 중에서도 제품형상에 따른 고유한 안정성이 적재시스템을 좌우한다.
  - (1) 어떤 제품형상은 제품 자체 그대로 적재하여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. 예를 들면 소폭 코일의 경우에는 나무 받침대를 바닥에 대고 그 위에 코일을 뉘어 적재하고 그 위에 받침대를 넣은 후 다시 코일을 적층(Stacking)하면 안전한 저장이 된다.
  - (2) 반대로 소폭 코일을 세워두면 불안정성이 커져 위험성이 있다. 이와 같이 안정성이 없는 철강제품의 적재는 적절하게 지지되고 있는 구조물의 지지 대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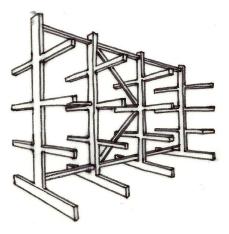
KOSHA GUIDE M - 170 - 2013

# 7. 제품 형상별 적재 시스템

- 7.1 길고 폭이 좁은 제품의 적재(봉강류, 강관류 또는 소형 형강류)
  - (1) 외팔보형 선반적재(Cantilever racking system)

수직 지주대와 수평 가로대로 구성된 구조물(<그림1> 참조)로서 선반인 가로 대에 제품을 적재한다.

- (가) 수평으로 적재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.
- (나) 수평으로 적재하는 것을 수직으로 적재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도 록 한다.
- (다) 구경이 작은 경우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중간에 받침대를 두어야 한다.
- (라) 여러 적재형태 중에서 가장 저장밀도가 크고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적 재 시 노동강도가 가장 적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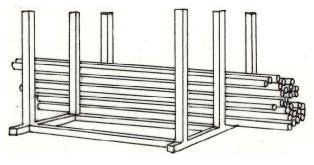
<그림 1> 외팔보형 적재대

- (2) 토스트형 선반적재(Toast racking)
  - (가) 하부의 기본 가로대에 두 개의 지주대가 수직으로 세워진 구조물(<그림

M - 170 - 201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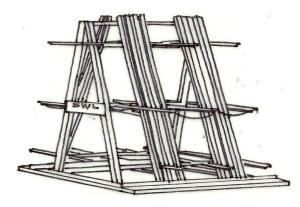
2> 참조)로서 수직 지주대 사이에 제품을 적재한다.

(나) 제품의 적재 높이는 수직 지주대 높이에 제한을 받는다. 따라서 수직 지 주대 높이가 제품의 적재 높이보다 높아야 안전하다.



<그림 2> 토스트형 적재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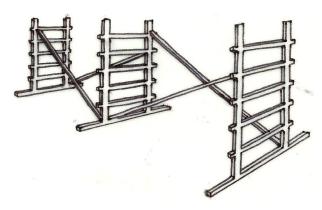
- (3) A형 선반적재 (A-Frame racking)
  - (가) A형 적재대는 하부의 기본 틀에 수직 지주를 A형(<그림 3> 참조)으로 세우고 외팔보형태와 비슷하게 수평 가로대가 선반을 이루는 구조물로서 수평가로대 사이에 제품을 기대어 세워 적재한다.
  - (나) 수평으로 적재하여 천정크레인으로 인양할 수 있다.
  - (다) 수직으로 적재하는 경우 제품이 적재대 밑면의 밖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일정 높이의 턱을 만들거나 체인으로 묶어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.



<그림 3> A형 적재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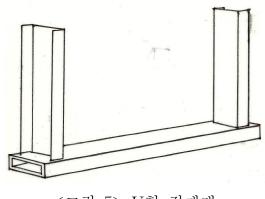
M - 170 - 2013

- (4) 사다리형 선반적재(Ladder racking)
  - (가) 사다리형 적재대는 토스트형 적재대와 유사하지만 수직 지주대에 수평 가로대가 여러 개 있는 구조(<그림 4> 참조)로서 수평가로대 사이 공간 에 제품을 적재한다.
  - (나) 구조상 접근성과 제품의 적재 또는 빼내기가 어렵고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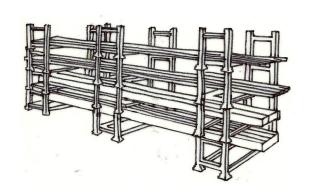
<그림 4> 사다리형 적재대

- (5) U형 선반적재 (U-Frame racking)
- (가) 하부의 기본 틀에 수직 지주대를 세워 U형태의 지지대(<그림 5> 참조) 가 쌍을 이루어 U형 사이에 제품을 적재한다.
- (나) 주로 한 종류의 제품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데 사용되고 있다.
- (다) 접근성은 좋으나 두 개의 U형틀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운반차량 등에 의해 외부 충격을 받으면 쉽게 붕괴될 수 있어 안정성이 떨어진다.



<그림 5> U형 적재대

- (6) 크래들형 선반적재(Cradle racking)
- (가) U자형 적재대를 변형하여 안정성을 높게 한 것으로 두 개의 U자형 적재 대가 고정된 부재에 연결되고 가로대 선반을 설치한 적재대(<그림 6> 참조)로서 가로대 선반 사이에 제품을 적재한다.
- (나) U형에 비해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제품적재가 제한적이고 제품인 양은 크래들 적재대와 함께 들어 이동시켜야 한다.



<그림 6> 크래들형 적재대

- 7.2 길고 폭이 넓은 제품의 적재 (H빔 등 대형 형강류)
  - (1) 자립형 적재 (Free standing)
  - (가) H빔과 같은 대형 형강류는 폭이 넓고 길어서 바닥에 나무 받침대를 깔고 그 위에 그대로 적재하는 것이 적합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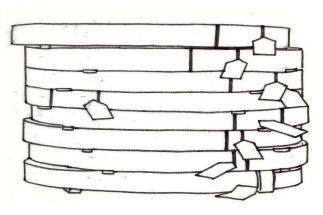
M - 170 - 2013

- (나) 제품의 인양은 천정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취급 시 주문 제작한 스플릿 바(Split bar)를 받침대로 하여 H빔 사이를 조정하여 인양 하면 안전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다.
- 7.3 코일류 제품의 적재 (소폭 코일, 광폭 코일)

코일은 지름을 폭으로 나눈 값이 6.5 이상인 소폭 코일과 6.5 이하인 광폭 코일에 따라 안전한 적재의 요건이 크게 달라진다.

- (가) 소폭 코일은 코일 중앙 구멍이 수직으로 놓일 때(Bore-vertical position) 는 안정적이지만 수평으로 놓이게(Bore-horizontal position) 되면 불안정하게 된다.
- (나) 소폭 코일을 수평 위치로 자립식 적재를 하면 구르기 쉬우므로 코일 적 재대에 기대게 하여 안정적으로 적재할 수 있다.
- (1) 소폭 코일의 적재
- (가) 수직 위치로 자립형 적재

코일을 바닥에 중앙구멍이 수직 위치가 되도록 하고 그 위에 여러 코일을 적층하여 적재(<그림 7> 참조)하며 코일 사이에 작은 각목을 받침대로 넣 어 안전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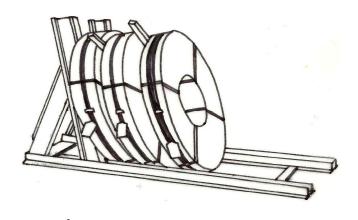
<그림 7> 구멍 수직 위치로 자립형 적재

(나) 수평 위치(Bore-horizontal)를 지지대에 기대기 적재

M - 170 - 2013

소폭 코일의 수평 위치로 지지대에 적재하는 방법에는 소폭 코일 크기에 맞는 케이지를 만들어 여러 개 코일을 적재하는 방법 또는 외팔보(Cantilever arm)에 걸어 적재하는 방법도 있으나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적재방법은 지지구조물에 코일을 기대기(Leaning coil racking)하여 적재(<그림 8> 참조)하는 방법이다.

- ① 지지대에는 코일을 안정적으로 적재하기 위해 적당한 각도의 백레스트 (Back rest)를 설치하도록 한다.
- ② 코일의 적재는 백레스트 각도로 곧게 적재되어야 한다.
- ③ 코일의 사이사이에는 나무받침대를 넣어 인양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한다.



<그림 8> 구멍 수평 위치로 기대기 적재대

#### (2) 광폭 코일의 적재

광폭 코일은 수평 위치로 자립적 적재로 하면 코일이 구르기 쉬우므로 구름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직 위치로 적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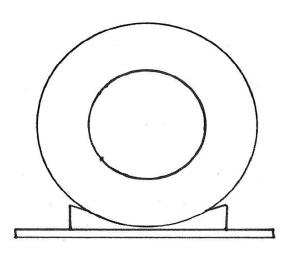
#### (가) 자립형 적재

광폭 코일을 수평 위치로 자립적 적재를 할 때는 바닥에 고정 쐐기(Chock)를 받쳐 (<그림 9> 참조) 코일의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.

- ① 코일의 하중 지탱은 쐐기가 해주기 때문에 1열 위에 2열을 쌓는 것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.
- ② 쐐기는 코일 한쪽 당 2개씩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.

M - 170 - 2013

- ③ 쐐기의 각도가 적으면 마찰계수가 적어 코일이 쐐기를 넘어 이동하므로 각도를 알맞게 조정하여야 한다.
- ④ 적재장 바닥에는 오일 등의 누출이 없도록 하여 쐐기와 바닥간의 마찰력을 확보해야 한다.
- ⑤ 코일의 자립식 적재장의 이동통로 옆에는 코일의 구름을 정지시키는 지 주대 등으로 스토퍼(Stopper)를 세워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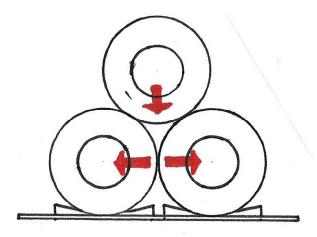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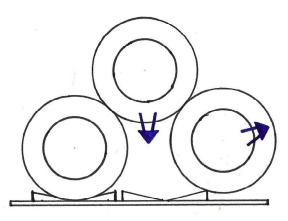
<그림 9> 구멍 수평 위치로 자립형 적재

# (나) 적층 적재(Stackin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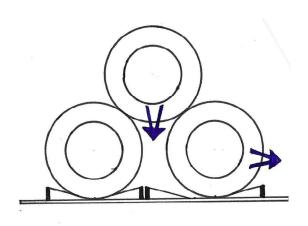
광폭의 코일을 수평 위치 형태로 여러 층으로 적층 적재를 할 때는 코일 중량이 맨 밑층의 코일에 미치기 때문에 (<그림 10> 참조) 붕괴원인이 될 수있다. 붕괴형태로는 맨 하층 코일이 쐐기를 넘어 붕괴되는 경우와 맨 하층 코일이 쐐기와 함께 미끄러지는 경우(<그림 11> 및 <그림 12> 참조)가 있다.

KOSHA GUIDE M - 170 - 2013





<그림 10> 상층코일의 하중영향 <그림 11> 하층코일이 쐐기를 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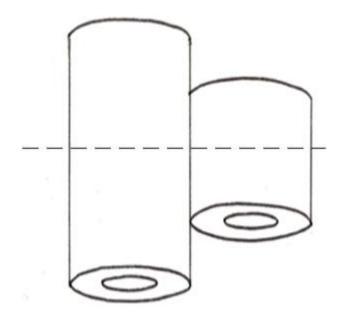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12> 쐐기가 미끄러지는 경우

광폭 코일의 안전한 적층적재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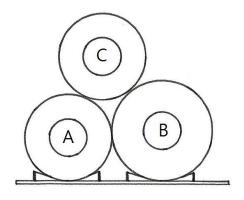
- ① 적층 높이를 낮게 유지하도록 한다. 3층 이상 쌓을 경우에는 이에 맞는 지지대를 설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맨 하층의 코일은 적절하게 지지 고정되어야 한다. 두 개의 인접 코일을 서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적층으로 인한 안정성을 향상 시키도록 한다.
- ③ 코일을 정확하게 정렬하면서 상층으로 적층되어 각 코일의 중심점의 연 결선 중점이 바로 상층 코일의 중심점(<그림 13> 참조)이 되도록 한다.

M - 170 - 201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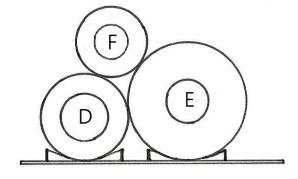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13> 중심선 일치된 코일의 정렬

- ④ 바닥층 코일은 서로 닿도록 한다.
- ⑤ 적층을 할 때에는 코일 양단에서 구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정된 구속물 을 설치하도록 한다.
- ⑥ 바닥층의 각 코일에는 양쪽에 2개씩 고정 쐐기를 설치한다.
- ⑦ 바닥층의 코일은 그 지름이 10%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상층 코 일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.(<그림 14> 및 <그림 15> 참조)



10% 이내로 안정적 적층



<그림 14> A, B 지름 차이가 <그림 15> D, E 지름 차이가 10% 이상으로 F 직경에 관계없이 불안정

(다) 지지대 또는 선반형 적재(Supported racked storag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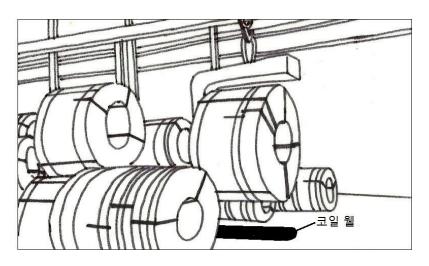
광폭 코일은 지지대 또는 선반형 적재를 할 때 더욱 안정한 적재를 할 수 있

M - 170 - 2013

다. 이때 코일이 적재장 밖으로 구름에 대비하여 구름방지 방책을 설치하여 야 한다. 지지대 또는 선반형 적재 형식은 아래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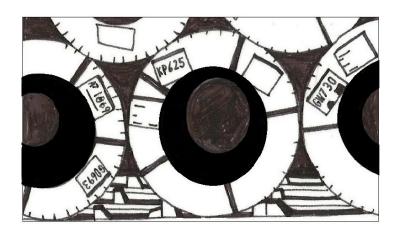
① 콘크리트 코일 웰형 적재(Concrete coil well) 코일형태에 맞춰 콘크리트 바닥을 파서 안치할 수 있는 코일 웰(Coil well) 형태(<그림 16> 참조)에 적재한다.

# ② 요람형 받침대 적재(Cradle)



<그림 16> 콘크리트 코일 웰형 적재

나무로 요람형 받침대를 코일 지름에 맞추어 <그림 17>과 같이 제작하여 안정성이 크게 증가하여 다층 적층적재에 효과적이다.



<그림 17> 요람형 받침대 적재

M - 170 - 2013

# ③ 자립형 선반 적재(Standing coil rack)

코일이 안치될 수 있도록 일정간격의 두 개의 수평대로 된 선반형 구조물로서 광폭 코일보다 여러 종류의 폭을 가진 소폭 코일을 적재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된다. 철제의 가로대에는 플라스틱 또는 나무를 덧대어 코일의 이동을 방지하고 있다.

# 7.4 판재류 제품의 적재 (후판 및 박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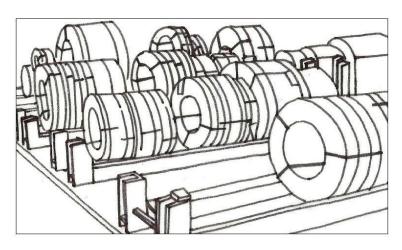
### (1) 자립형 적재

후판 등의 판재류 제품은 바닥에 각목을 적당한 간격으로 깔고 그 위에 적재하는 <그림 18>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.

판재류를 적층 적재(Stacking)할 때에는 각 제품 사이에 각목을 적절하게 지지하여 인양 등 취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.

# (2) 팔레트형 선반 적재(Pallet racking)

팔레트형 선반을 만들어 판재류를 수평으로 적재하는 방식으로 팔레트 선반은 바닥이나 벽에 고정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작은 크기의 판재류를 안전하게 적 재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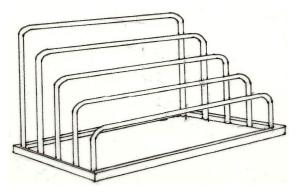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18> 코일의 자립형 선반 적재대

## (3) 토스트형 선반 적재 (Toast racks)

M - 170 - 2013

하부 구조물에 수직으로 칸막이 지지대를 설치하여 제작된 구조물(<그림 19>참조)로 비교적 작은 크기의 여러 종류의 판재류를 수직으로 세워 기대게 하는 적재방법으로 옆으로 이동을 막고 제품을 꺼내도록 설계되어 있다.



<그림 19> 토스트형 선반적재대

# 8. 적재장에서 사고발생 유형별 안전조치사항

## (1) 고소에서 추락

근로자들이 불안정한 수단으로 고소에 있는 제품에 접근할 경우(예: 선반형 적재대에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 등) 또는 부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 하고 고소에서 작업하거나 제품의 날카로운 표면 또는 단부에서 추락하는 사 고가 발생한다.

- (가) 적재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소에 접근할 필요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.
- (나) 고소에 접근할 때 안전한 접근수단(안전발판, 안전작업대, 이동식 고소작 업대 등)을 제공하여야 한다. 단, 이동식 사다리는 가장 불안정하다.
- (다) 작업대에는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움직이는 적재제품 및 이동하는 차량에 충돌

M - 170 - 2013

근로자들이 적재제품 사이에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통로가 부적절할 경우 제품 운반차량에 충돌하거나 또는 적재된 제품이 굴러 근로자와 충돌하 는 사고가 발생한다.

- (가) 근로자들의 이동통로, 작업지역 및 적재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표시(예: 적재장 바닥에 페인트마킹 등)를 하여야 한다.
- (나) 차량 이동통로와 근로자 이동통로는 분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보행자 횡 단지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.
- (다) 적재된 제품이 굴러 보행자와 충돌을 막기 위해 적재장소와 보행자 통로 사이에 제품의 구름방지 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때 구름방지 방책은 적재제품의 이동 또는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.
- (3) 제품 운반차량 및 인양설비로 부터 충돌

제품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원 또는 크레인 등 인양설비 운전원의 시야를 제한 받거나 보이지 않아 운반 차량 또는 인양된 제품의 이동시 근로자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다.

- (가) 천정운전원이 인양된 제품을 이동시킬 때 이동시 방해물 또는 이동통로 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볼 수 있어야 한다.
- (나) 운반차량의 운전원이 보행자를 볼 수 있어야 한다.
- (다) 제품 적재높이를 제한하여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. 특히 차량이동 통로와 근로자 보행통로가 가까울 경우 적재제품의 높이를 제한하여야 한다.
- (라) 모든 작업장은 적절한 조도의 조명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시야를 넓게 하는 보조기구(예: 볼록거울 설치 또는 근로자의 형광 작업복 착용)를 설 치하여야 한다.

M - 170 - 2013

(마) 차량 또는 운반설비의 운전자가 좋은 시야를 갖도록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거울을 장착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한 차량을 선정하도록 한다.

#### (4) 미끄러짐 또는 걸림

제품표면은 미끄러워서 미끄러지거나 적재제품의 돌출부분 및 날카로운 단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한다.

- (가) 근로자들이 제품에 오르거나 제품을 건너뛰는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.
- (나) 근로자 이동통로와 작업장의 바닥단면은 오일 또는 물의 누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다) 제품을 적재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싣거나 내리는 지역과 차량통행 로는 겨울에 눈이나 얼음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(라) 무질서한 적재제품의 정리정돈 또는 폐기물의 제거를 통하여 걸려 넘어 지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.
- (마) 보행자 통로에는 돌출된 적재제품, 빈 팔레트 및 적재의 느슨한 포장띠 등 걸리는 위험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바) 작업장 바닥 또는 도로 표면에는 패인 곳, 돌출물 또는 부적절한 배수구 덮개 등이 없어야 한다.

#### (5) 낙하물에 의한 충돌

적재제품은 인양 또는 이동 중에 낙하할 뿐만 아니라 샤클 등 인양설비의 부속장치의 낙하물이 신호수, 줄걸이 작업자 등의 머리에 충돌하는 재해가 발생한다.

(가) 크레인 운전원 등 적재장소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머리 보호를 위

M - 170 - 2013

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.

(나) 낙하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낙하방지시설 또는 낙하물이 더 이상 이동통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지시키는 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.